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3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이연희·박상혁·문진석

박홍배 • 정성호 • 김정호

이정문 · 김윤덕 · 김남희

안태준 · 허종식 · 서미화

홍기원 • 한민수 • 이광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제7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선정 기준, 관리"를 "관리"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선) ① ~ ④ (생 략)	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
	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지
	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
	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u>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u>
	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
	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
	<u>로</u>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u>⑥</u>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	<u>관리</u>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기계 기계 및 기계기
<u>⑥·⑦</u> (생 략)	<u>⑦·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